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는 공공 일터 조성을 위한

20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서

2021

기관명	한국마사회
평가일자	'21. 1. 28.(목) ~ '21. 1. 29.(금)

□ 총괄

'20년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안전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체제가 본사와 현장, 수급업체 등에 일관되게 전파되고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동성을 주요하게 평가하였다.

1. 평가 개요

- 평가일자 : '21.1.28.(목) ~ 1.29.(금)
- 평가그룹 및 유형 : 공기업 II, (서비스집중형)

2.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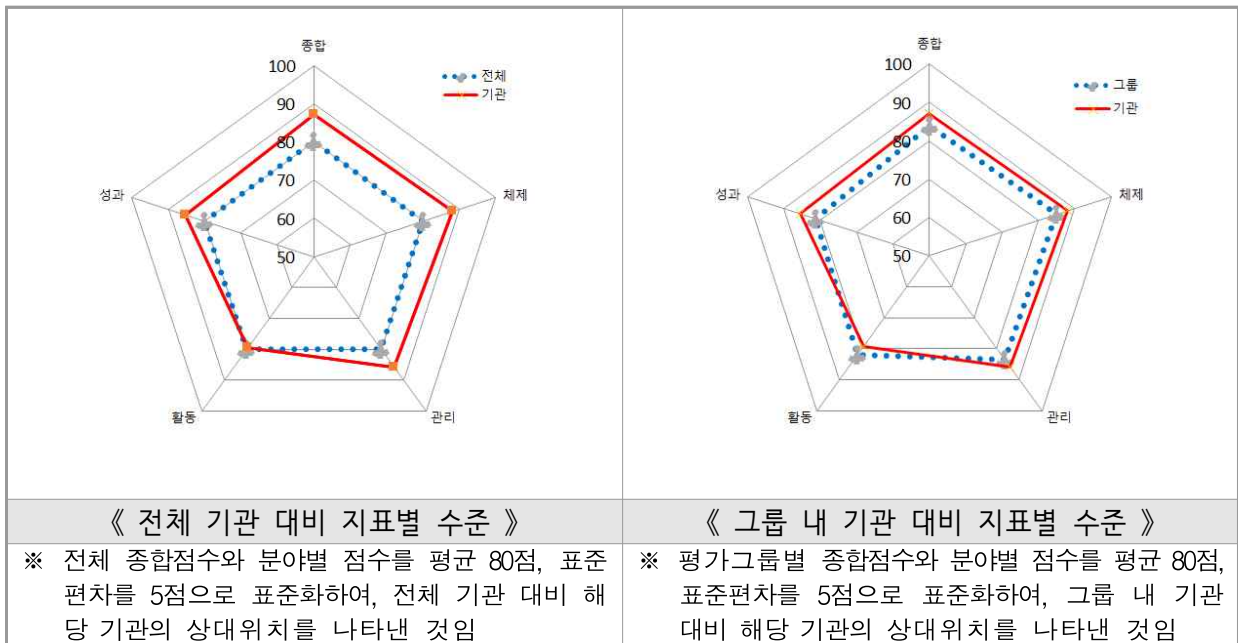
절대등급	A 등급	상대등급	A 등급
------	------	------	------

❖ (참조) 등급별 적용기준

절대 등급						상대 등급						
900점 이상	800점대	700점대	600점대	500점대	500점 미만	S	A	B	평균	C	D	E
S	A	B	C	D	E	~2σ	2σ~1σ	1σ~	μ	~1σ	-1σ~-2σ	-2σ~
※ 만점기준 평가 원점수를 6등급 구분 적용						※ 그룹별 평균(μ) 및 표준편차(σ) 적용						

3. 평가 총평

- 기관의 안전보건체제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보건활동 분야에 추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우선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평가 점수표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등급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300	b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a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b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a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b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c
㉡ 안전보건관리 (7항목)	소 계	250	c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a
	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활동	30	a
	3. 위험성평가	40	b
	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b
	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c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40	d
	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40	d
㉢ 안전보건활동 (10항목)	소 계	200	d
	[㉢-1 작업장]	100	-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20	c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c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b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20	d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0	-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e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e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e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0	e
	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35	e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5	b	
㉣ 안전보건성과 (3항목)	소 계	250	b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50	b
	2. 안전문화 확산	100	b
	3. 사망사고 감소 성과	100	a

* 평가지표별 등급 분류 : 5등급 (100점 기준 환산)

구분	90점 이상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등급	a	b	c	d	e

□ 평가시사점

기관의 환류활동을 위해 안전활동 수준평가 일부 지표의 **기회요소**(유지, 전파, 발전)와 **위험요소**(개선, 도입, 이행)를 평가 시점 기준으로 제시함

1. 평가시사점 작성 예시

평가시사점		
지표	착안 사항	환류 사항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기회요소 최고경영자 참여도	유지 경영진 안전보건 경영회의 직접 주재활동 발전 경영자 현장 안전보건점검 참여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위험요소 예산 편성·관리	도입 안전보건 소요예산 조사 및 편성기준 마련 개선 안전보건 예산 집행을 상시 관리체계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위험요소 규정 제개정, 구성	개선 규정에 산업안전보건법 구성요소 반영 이행 제정된 지침의 현장작동성 상시 관리

①유지(현재 적정·우수상태 지속 유지) ②전파(관련 부서·기관 등 전파 할 우수사례) ③발전(고도화시 경쟁력 확보 가능)
④개선(일부 보완 및 개선 등 필요) ⑤도입(제도 신규 도입·제정 필요) ⑥이행(현행 제도 등 작동성 강화 및 활용)

2. 평가시사점 환류사항 분류기준

구분	환류요소 설명
기회요소	유지 ■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재 상태를 견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파 ■ 우수사례로 관련 부서 및 타 기관 등에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문화 확산 지표 등에 적용)
	발전 ■ 현행 제도·절차 등을 고도화할 경우 실행력(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경우
위험요소	개선 ■ 일하는 방법·절차·매뉴얼 등 구성항목 누락 등 일부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도입 ■ 제도·조직·인력·업무 절차 등의 신규 도입 또는 제정이 필요한 경우
	이행 ■ 제도·조직·인력·업무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 작동성이나 활용이 안 되는 상태나 활동

□ 분야별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경영체제

- [지표구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체제 구축, 안전기본계획 등 5개 지표
 [적용구분] 본평가(종합평가) 현장작동성 평가(현장평가)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안전보건경영 투자,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한국마사회(이하 ‘기관’)은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보건경영 투자 분야가 우수하다. 다만,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분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기관의 최고경영자는 현장의 이해와 주인의식을 갖도록 안전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직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책임자(공공기관 지침)를 맡고 있다. 이에 서울경마장을 현장방문하고 지역 건설공사를 안전보건점검(연 5회)하였다. 안전보건경영방침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활동, 근로자안전, 고객안전의 내용을 폭 넓게 담고 있으며 회의실·사무실·홈페이지·사내인트라넷 팝업으로 게시하고 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비비(20억)를 별도로 책정하여 그 사용권한을 안전관리단에 주어 문제점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경영전략회의에 안전관리단 업무를 보고하며 하반기부터 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석하고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경마산업 상생발전 중앙위원회를 개최(연 2회)해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경영방침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전사 교육 또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회장이 주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조직에는 많은 역량지원을 했지만 안전조직 내 개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미흡하다. 회장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면서 하반기부터 모든 성과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하던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참여율을 높여 안전보건활동을 강조하기를 기대한다.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안전관리책임자를 회장으로 전환(기존 경영관리본부장, ‘20. 8월)하여 안전보건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전전담조직을 부에서 단(안전관리단)으로 승격하고 회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본사 뿐 만 아니라 지역 사업소(부산, 제주사업장, 지사 30개소)에도 안전팀을 운영하고 안전관리단과 협력하고 있다. 본사의 안전관리단은 규

모와 자격조건도 적정[10명, 안전 관련 8명(법정 선임 3명), 보건 관련 2명(모두 법정 선임), 기타 응급구호팀 구성]하다.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문책규정에 안전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단의 업무와 책임, 문책 책임자(경마운영본부장)를 명시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전문가를 채용('20. 10월 종료)하였으며 전문직위 규정에 안전관리를 포함해 전문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정 위원회 활동, 안전성과 관리회의, 경마산업 상생발전 중앙위원회,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기관별 안전보건조직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근로협의회·안전경영위원회도 운영규정을 갖추어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또한 본사와 각 사업소에서 인증받았다.

그러나 직제규정에 맞추어 단위업무와 책임자를 위임전결규정에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위로 운영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한다지만 사실상 사내 직무교육일 뿐이며 근무평정이나 급여 인센티브, 외부교육기회(학위, 자격증, 우수기업체 방문 등) 등 혜택과 관련한 규정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한, 많은 위원회를 거침에도 서울·부산·제주의 안전을 본사가 종합적으로 토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부산, 제주 위원회 이후 서울에서 종합 위원회 등)해야 한다.

현재 마사회의 주요 이슈가 이해관계자 중 조교사·말관리사·기수의 현장위험이라는 점에서 업무선이 밀접한 경마운영본부에 상생발전위원회 역할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기술적·재정적·법적 안전보건 지원대책은 전문성 있는 스태프조직인 안전관리단이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결정 역시 결국 회장 직속의 안전관리단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생발전 위원회에 안전관리단이 참여하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올해 안전보건예산은 약 87%를 집행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정책, 전염병, 매출액 증감)에 따라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차기 년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안전예산만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 있고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반영하고 있다. 2020년 예산(1,046억 원) 대비 약 9% 감액된 예산(952억 원)을 2021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매출액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총 예산 대비로는 2020년 13.2% 대비 2021년 14%로 안전예산규모를 유지하였다. 마사와 휴게실 리모델링, 관계자 전용 복지관 신축 등 작업환경 개선투자로 관리사와 고객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비해 안전사업비 및 관리비(근골격계 검사 등)와 교육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현장 안전성이나 인력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고 그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작성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규정은 기관의 내규 중 상위 위상에 위치되어 있다. 또한,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기관 내 위험 및 작업특성이 반영된 안전관련 매뉴얼(10종), 절차서(16종), 지침(4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련 법규 등록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법규 준수여부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 절차 및 지침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서 등에 담긴 안전보건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수급업체 포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교육 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기관은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방침을 제정하였으며 안전관리 대상 시설, 사업장, 건설발주현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년도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수립하였다. 또한, 안전(산재) 사망자 수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선정된 핵심관리지표를 내부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수립된 안전기본계획의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임직원, 수급업체, 국민)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기본계획의 목표는 기관, 수급업체 및 대국민의 재해(부상, 질병 등)에 대해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0년 말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 문화수준 진단 및 중장기 행동기반안전 중심의 안전로드맵 수립 등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보건 수준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시사점

지표	착안 사항	환류 사항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기회요소 경영자 실천의지	유지 경영진 안전보건 경영회의 직접 참여 유지 최고경영자 현장 안전보건점검 참여 발전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공유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기회요소 안전관리규정	유지 규정 제정·개정 절차 준수 전파 안전보건관련 법규 등록부 작성관리 발전 규정 제정·개정 후 근로자에게 내용 공유

B. 안전보건관리

[지표구성]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안전보건활동 참여, 수급업체 지원활동 등 7개 지표
 [적용구분] 본평가(종합평가) 현장작동성 평가(현장평가)

안전보건관리는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활동,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관은 지표전반에서 우수하거나 양호하다. 다만,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부분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직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기관은, 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내게시판을 통해 월별공지, 사내메일 발송, 유선전화 등으로 독려하고 있다. 특히, 조기수검시 독감무료 접종 등 혜택을 부여하여 수검율을 제고하는 노력은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2020년도 일반·특수건강검진은 대상 5,373명, 수검 5,335명, 유예 84명으로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취합하여 부서별, 성별, 연령대별 검진결과를 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상소견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과거 5~7년간 검진결과를 비교분석 후 대면·비대면 건강관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소견자 사후관리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과거·투약력 조사 등

대면으로 실시하고, 질환별 건강정보지 제공 등 비대면으로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은 대상물질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 후 작업공정별 대상인원을 파악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절차로 관리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1개소를 제외한 전 작업장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내게시판 및 협조전 발송, 책자 제작·배부 등으로 직원들에게 공지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노출기준초과 공정(측정 : 94.4dB, 9명)은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청력보호구 지급 및 착용, 특수건강진단 시행하는 등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기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단에서 총괄 방역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전파하였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지정 및 부서별 책임자·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단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비품 지급,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및 보건소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일 코로나-19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 사업장 방역관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활동

고객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매뉴얼은 전화응대와 불만고객응대, 고질·악성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별로 구분되어 있어 현장 적용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는 유관기관 현황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은 사내 자체 신고 시스템 및 수호천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있으며, 전화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안내 등 법적조치를 준수하고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심리진단 및 전문가심리상담 등 힐링캠프를 진행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원들의 건강증진활동과 관련하여 기관은 직무스트레스 관리(EAP) 및 생활습관개선·관리, 근골격계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은 매년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하고 스트레스 상위 50%이상 직원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전문 운동처방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별 신체상태, 작업유형을 파악하여 근로자별 스트레칭·운동방법을 처방해 주는

등 그 사례가 우수하다.

또한, 기관은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 및 뇌심혈관계 위험도(이상소견자 대상) 등 생활습관 개선·관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응급구조사, 불법단속반, 강성 민원 상담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 참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B-3. 위험성평가

기관은 위험성평가 절차서(KRA-SHP-01)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사 및 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그 결과를 사내에 게시하는 점이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절차서에 작업공정·내용에 따른 평가기법 구분, 평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및 외부전문가 범위, 교육 실시 내용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사무부서에만 위험성평가 실시한 점, 가스계 소화시설의 질식위험요인 도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규정에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실행근거가 다소 미약한 바,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화를 기대한다. 그 외에도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수준 향상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B-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방법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법정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교육체계와 교육평가 제도가 적절하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년도 교육결과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의 전문성 정보 혹은 전문성 요구사항 등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교육계획에 포함되었고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등 전년도 평가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개선을 추진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다만 말(馬)과 관련된 매뉴얼 등이 2016년에 제작되어 있어 이에 대해 안전전담부서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내 직원들이 말 관련 안전교재를 업데이트하여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교재 개발이 권장된다.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기관의 관리자·근로자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 수준은 우수하나 위험성평가, 직업건강 등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화할 여지가 있다. 안전보건관련 신고·제안·포상제도의 경우 사내 전산망 K-HUB(임직원), 안전신문고함(오프라인 4개소), 핫라인(유선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2020.07.01.)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련 신고·제안·포상 운영이 제도화(내규 또는 지침서 제정 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협력업체·이해관계자 등의 참여 확대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관은 해당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비상시 대비·대응을 관리하기 위해, 기관은 비상시 대비·대응 및 재난대응 매뉴얼로 관리하고 있다. 기관은 비상시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재난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10개 유형의 매뉴얼(화재, 정전, 소요사태, 피난대비, 테러, 붕괴, 전염병, 풍수·설해, 지진, 방사능 오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의 재난대응매뉴얼은 전파 및 질서유지, 긴급복구, 방호, 복구 및 구호 등의 대응 프로세스와 상황별 세부행동절차, 반별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의 비상시 대비·대응 훈련은 직원 재난역량(심폐소생술) 강화 교육, 소방안전훈련, 코로나-19 방역체계 훈련,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처 훈련, 미세먼지 저감조치 훈련 등 총 5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관은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비상대응 시설과 소화기, 재난안전기구, 공기호흡기 등 비상대응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하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를 위해 비상발전기는 주 1회 무부하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USS, ESS(에너지 저장장치)는 일일점검을 통해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대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안전 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교육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비상 대비 및 대응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기관은 소방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검주기·점검내용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기관은 체계적인 재해조사를 위한 지침과 절차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재해발생보고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등이 갖추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해 조사가 이행되고 있으며 관리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대책과 개선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또한, 사내 전자게시판 게시와 사례집 제작·배포를 통해 전사에 전파하는 점은 동종 유사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재발방지대책과 개선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개선대책과 이를 이행하는 현실적 대안 제시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차사고 발굴 및 개선노력을 위해 기관은 지침과 절차서를 마련하였고, 협의체 및 회의기구 운영을 통한 발굴과 현장과의 수시 소통을 통한 발굴, 안전신고제·안전제안 인프라를 통한 아차사고 발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록유지와 공유·전파를 하고 있다. 다만, 아차사고는 잠재적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사고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개선대책의 마련과 조속한 개선조치가 요구된다.

B-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평가 기준·방법 등에 있어, 기관의 안전관리부서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01.06.)에 의한 도급의 정의를 인지하여 안전관리 수급업체의 범위를 모든 수급업체로 정의하고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평가 및 관리를 수행코자 하였다. 하지만 계약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경쟁입찰공고 시 지침에서 규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항목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정성평가의 인력·조직·관리기술 항목에서 안전사고 예방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인력전문성 및 수급의 안전성, 고객만족 서비스교육 적절성 등과 함께 구성되어 실제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안전 주관부서장이 필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등 기관 내 부서 간 협력, 관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실행에 있어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아 유지 중이고,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 협력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절하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B-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에 대하여, 기관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 장소 및 자료제공 등 관계수급인에 대한 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무자 사전교육,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교육, 재해사례를 통한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을 지원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도급업체에서의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관계수급인 소속 안전보건 교육강사를 양성하여 관계수급인이 직접 교육을 이행하고 도급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의 결과보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제 실시여부 및 적정성여부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 기관은 전 사업장의 위생시설(휴게시설, 건강관리실, 목욕시설, 세면, 세탁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수립·집행(2019년도: 85백만원, 2020년: 601백만원)하여 위생시설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가 돋보인다. 다만, 본관 휴게실의 경우처럼 근로자들이 동시에 휴게를 취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적정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에 대하여, 기관의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도급 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결핍 우려 장소인 오·폐수처리장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가 도급 시 서면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 앞서 언급된 도급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시사점

지표	착안 사항	환류 사항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기회요소 근로자 건강진단	유지 건강이상소견자 지원활동 추진 유지 건강진단 실시율 및 결과표 관리 전파 조기수감시 독감무료 접종 혜택 부여
B.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요소 수급업체 관리	개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의 기준준수 개선 안전부서와 사업부서 역할 및 협업체계 개선 안전평가 및 관리의 내실 운영

C. 안전보건활동

[지표구성]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등 4개 지표

[적용구분] 본평가(종합평가) 현장작동성 평가(현장평가)

C-1. 작업장

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은 기본 안전보건관리,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관은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조치는 양호하다. 다만,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수준은 미흡하게 평가되었다.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기관은, 본사 내 적정조도 확보, 출입구 및 비상구 유지, 보호구착용 등 안전보건표지를 양호하게 부착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펌프실 진입계단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 부착, 승강기 기계실 전면 안전난간 설치, 냉동기 냉매·도시가스·부동액·청관제·소화약제 사용 장소에 경고표지 부착, 냉동기냉매·도시가스 등에 대한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본사와 수급업체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작성·관리, 방독마스크·보안경 추가지급 등으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위해, 기관은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수검 및 전기·기계기구 외함 접지가 양호하게 실시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승강기 기계실 내 회전부 방호덮개, 승강기 제어판넬 도어잠금조치(충전부노출방지), 모래세척장 투입부 측면 안전난간 등이 보완이 필요하며, 기계·설비 정비·점검·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불시 전원투입방지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LOTO; Lock-Out Tag-Out, 불시가동 잠금장치 및 안전꼬리표 비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제도적인 사항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확인한 결과, 기관은 실험실

화학물질 취급, LPG가스 원료 가열작업, 기계실 도시가스 사용작업, 이동식 가스집합장치 사용작업, 유류저장소, 소화설비 저장소 등을 위험장소로 관리하고 있다. 위험물 취급장소에는 화재감시 시스템 운영, 가스누출감지기 설치, 각종 사용기준 및 보호구 적용 기준 및 지급,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은 소방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조치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소화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안전인증 ‘합격’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복지관 측면 인화성물질 보관장소는 방폭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방폭지역 구분도를 작성하고 비방폭형 가스검지기를 방폭형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실험실은 시험에 필요한 시약과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물질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보관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가 적정하며 시약은 밀폐용기 및 보관함에 넣어 담당자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하고 있다. 또한, 실험실 내 시약을 직접 취급하거나 실험장비의 흡 누설위험이 있는 경우 포위식·암후드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착용해야할 보호구를 장비 및 출입구 등에 명시하였고 그 착용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유해물질 등록부는 화학물질 사용량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밀폐공간 대상을 선정하고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작업허가 등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은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밀폐공간 대상 선정, 관리책임자 지정, 작업용 보호구 및 대피용 기구, 긴급구조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중독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폐수처리장은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가스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검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점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가스농도측정기는 측정농도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기관의 안전작업허가는 안전작업허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침은 책임과 권한, 운영절차, 업무절차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은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구분되어 작업시작 전·중·완료 단계별 안전관리·점검방법이 명시되어있다.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실적은

234건으로 재난안전협의체를 통해 주요문제점은 공유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기관은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부서는 허가대상 작업을 명확히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위험이 높은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에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시작 전·중·후에 따른 안전조치와 현장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체계를 강화하고, 밀폐공간 및 방사선 작업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업중지 요청제와 관련하여 기관은 작업중지 요청 범위, 운영절차 등 추진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요청·조치사항을 결과서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작업중지 요청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교육 시 홍보, 안내공문 작성 배포 등으로 작업중지 요청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작업중지 요청제에 대한 인식 및 실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C-2. 건설공사 발주현장

건설공사 발주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은 계획, 설계,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과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및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수준은 우수한 반면,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내실화가 요구된다.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 발굴과 설계조건 반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굴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재해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통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설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사례 검토가 설계조건에 담길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분석이 필요하며, 굴착 작업 시 굴착 기울기 미준수 등 주요 사망사고와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설계조건이 ‘시방서 반영’,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으로만 되어있어, 발주자의 안전 의도가 설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없었을

것으로 평가되는 바, 도출된 위험요인이 도면화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의 참여를 권고한다. 아울러, 가설 전기 취급 등 감전 예방에 대한 사항의 누락, 전기·소방·통신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 사업개요 및 현장제반정보 작성 수준과 관련, 기관은 전력간설 지하매설물 등을 파악하고,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사금액 산정은 20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기숙사) 단가에 친환경 인증(10%) 및 물가 상승률(10%)을 반영하였고, 공사기간은 비 작업일수(기후, 공휴일 등),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건설공사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다만,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설계 입찰공고('19.6.19.) 이후에 작성되어 뒤늦게 설계자에게 전달된 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산정 시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주 52시간 근로 제도 반영 등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고, 적정성 판단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서 발주자의 역할이 공사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길 기대한다. 아울러,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안전경영”의 일환으로 지역 최고 책임자까지 보고되기를 권장하며, 당초 기본대장내용에서 면적이 축소되어 공사기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최신화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 검토 및 설계반영과 관련, 설계자에 대한 기관의 지원·검토 기준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결과가 확인된다. 특히, 흠막이가시설 Strut 무너짐에 대한 조치사항, 시스템 동바리 구조계산 및 상세도면 작성, 강관비계 무너짐 및 작업자 떨어짐 방지를 위해 시스템비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실시도면 및 설계내역에서는 시스템비계 사용과 벽체 단열재의 난연재료 선정만 반영되어 있고, 흠막이지보공 및 시스템동바리는 실제 적용구간이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 과정이 요구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내용 및 관리 수준과 관련,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계획 등이 확인된다. 공사금액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원가계산(표준품셈)을 적용하였고, 공사기간 산출은 비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실시설계 작성일과 동일한 시기에 작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기간 산출서에 시공사의 안전 활동, 미세먼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고려되고,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변경이력 관리 및 전기·통신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도 요구되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안전보건전문가 참여와 관리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권장한다.

C-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과 관련, 기관의 공사감독자는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확인 실적이 확인되었다. 다만, 설계 안전보건대장상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과 연계 없이 시공사의 이행 계획이 수립된 점과 시공사의 이행 계획의 정보가 부족하여 언제 위험 작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중점 이행 사항이 무엇인지를 감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발주자의 점검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가 없고, 외부 기관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의 점검 방법과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공자의 이행 계획 검토 및 확인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전문가 참여를 권장하며, 분리 발주 한 전기·통신·소방 분야에 대해서도 이행 확인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수준과 관련,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축공사 착공일 이전에 작성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주요 공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내역,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분리 발주한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월별 실행 금액이 확인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최초 작성일 이후 변경이 되었음에도, 변경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고, 전기·통신공사 등에 대한 대장 관리와 함께 전문가 참여를 권장한다.

C-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수준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체계와 관련, 기관은 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제주지역본부 시설부서에서 해당 현장 감리원을 조정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 발주된 시공사에게 선임된 조정자를 통보하였다. 선임된 조정자는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 충분한 경력으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다 볼 수 있다. 다만, 조정자 통보일자는 법적 다툼 해소 차원에서라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의 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재된 내용 이외 구체적인 세부 업무절차 및 업무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전보건조정자가 혼재한 위험 작업과 공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원활히 유도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자체의 세부계획 및 수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발주자 및 시공사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방안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수준과 관련, 해당 현장에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된 위험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월 1회 안전보건조정회의를 주관하여 발주자와 각각의 시공사 총괄책임자와 함께 해당 내용을 검토 및 공유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정회의록 및 조치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 및 사유 명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혼재된 위험 작업 및 공정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공사 일정 조정 및 작업 구획을 구분하여 다중 작업 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한 조치 전·후 위험성을 측정하여 결과물로 기록할 경우, 향후 공정 진행에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C-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기관은 본사 시설처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매뉴얼(2020.01.제정)’을 제정하여 발주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 관련 업무를 기술하였다. 하지만, 기술된 내용 일체가 건설기술진흥법에만 국한된 내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발주자의 업무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내용의 수록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본사 시설처에서 주관하여 가안을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이 안전 점검 등 일부 사항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발주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한다.

공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점검,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확인, 현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나 매뉴얼, 업무 처리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였다. 다만, 정기교육 이외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안전보건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더불어 공사감리자까지 정기교육 이외의 교육(위험성평가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시공사 위험성평가에 대한 발주자 이행 점검 및 조치수준과 관련, 기관은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위험성평가 회의를 통해 시공사의 위험성평가 이행에 대한 발주처 점검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내용이 관리적 사항에만 국한되어 있는 등 미흡함이 있으므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이행점검 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의 경우 자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위험성평가 지침은 없었으며,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과, 개선 조치 내용이 위험요인과 상이한 점 등 미흡함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시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 교육이수 독려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발주자는 매일 해당 작업에 관한 작업허가서를 발행함으로써, 작업 내용 및 자체 안전 조치사항을 체크하고 감리자 확인 및 감독자 허가 후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행 점검 수준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시공사에서 작성하고 활용하는 작업 계획서에 대해 검토 절차나 수행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건설공사 발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상태 수준과 관련, 기관의 발주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공정률은 15%이고,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타설 후 양생 중으로 위험 작업은 없었다. 다만, 지하층은 조명을 설치하여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기계실에 사용되는 조명용 배선의 접지선이 단선되어 있어 접촉 시 감전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이미 시공된 상태이긴 하나 기계실(층고 4m) 및 공동구(1.8m) 거푸집동바리 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아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터파기 작업 시 굴착사면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기울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C-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공법변경 및 공사기간 단축금지, 공사기간 연장요청 시 이행 수준과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하여 시공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일체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업무절차 등을 포함하는 규정·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의 경우 기관은 각각의 발주공사 입찰공고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과 산출 근거를 사전 고지하였다. 또한, 총 공사비 예정가격에 의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 의해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다. 4개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누계 공정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을 확인한 결과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항목별 사용내역 또한 부적정한 사용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시사점

지표	착안 사항	환류 사항
C.1.4. 위험작업 및 상황안전관리	기회요소 안전작업허가제	발전 안전작업허가제 대상범위 명확화 발전 안전작업 점검·조치사항 기록 관리
	기회요소 작업중지요청제	발전 홍보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유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운영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	위험요소 중점유해위험요인	개선 유해·위험요인 발굴 기준 및 관련내용 검토 개선 위험성 감소대책의 설계조건 반영
C.2.1.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 보건활동	위험·기회요소 위험성평가	개선 발주자의 설계자 위험성평가활동 지원 확대 발전 위험성평가 결과 설계 반영 검토

D. 안전보건성과

[지표구성] 안전보건경영 성과측정, 사망사고 감소 성과 등 3개 지표

[적용구분] 본평가(종합평가) 현장작동성 평가(현장평가)

안전보건성과는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안전문화 확산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관은 지표전반에서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기관은 산업재해율 감축 목표를 산업재해와 고객사고로 구분·제시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실행과제의 성과측정계획(목표치와 실적, 측정결과와 부진사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정도를 확인(연 2회)하고 있다. 내부경영실적에도 안전지표 KPI와 가감점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안전활동수준평가의 미흡한 점도 연초에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관리회의로 안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내용(성과측정, 내부심사, 시정조치)에 대해 경영자(회장) 검토를 수행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교사협회나 기수협회 등과의 안전관리 현안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자율진단하였다.

그러나 성과측정의 모니터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달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리하는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안전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과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성과측정표에 포함하여 관리하면 이행정도를 동시에 확인하기 용이하다. 또한, 성과측정에서 부진사유 및 추진계획은 구분하여 따로 작성해서 문제점 위주로 정리하고 개선 완료하였더라도 애로사항을 분석하는 회의를 거쳐 목표의 상향조정여부를 재설정하는 절차를 권장한다. 특히, 기관은 이해관계자(조교사, 말관리사, 기수 등) 이슈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해당 안전수요에 대응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관계자 부분이나 안전기본계획 세부활동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D-2. 안전문화 확산

기관은 2020년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테마 및 시기를 설정하고 기관 내 55개 부서에 자율적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결과를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여 그 실적을 관리(10월 기준 : 8회 881명 참여, 221회 점검, 191회 부기관장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안전영상 제작 및 경마방송 송출, 사내 팝업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안전점검의 날은 전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여지가 있으며 계획 대비 실적(행사형태, 참여부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은 중장기 BBS(Behavior Based Safety)를 통한 임직원 및 관계자의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으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시사점

지표	착안 사항	환류 사항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기회요소 계획수립·이행	유지 목표치와 실적 등 구체적 성과측정계획 발전 지속적 성과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발전
	기회요소 결과분석·환류	전파 안전수요에 대응하는 문제점 등 목표상향 유지 성과측정결과의 경영자 보고